

Deloitte.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정책 제안

DEC 14, 2020

Clients & Industries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01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세계 정책 방향과 경제적 영향



바이든 행정부의 세수 확충 방향

대략 USD 2.4 trillion 의 연방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USD 1 trillion은 개인납세자 과세, USD 1.4 trillion은 법인 과세에 대한 개정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밝힌 세계 개정 방향 중 주요사항 및 이를 통한 추가 확보 세수 금액은 다음과 같음.

- ✓ 법인세율 인상-USD 727 billion 추가 확보
- ✓ GILTI 유효세율 인상-USD 705 billion 추가 확보
- ✓ 최저한세 과세-USD 109 billion 추가 확보
- ✓ 금융 위험수수료의 도입-USD 84 billion 추가 확보
- ✓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세계 혜택 폐지-USD 25 billion 추가 확보
- ✓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TCJA) 이전으로 세율 및 한도액 복원
-USD 163 billion 추가 확보
- ✓ 과세표준 USD 1 million 이상인 개인 납세자의 양도소득 및 배당에 대한 우대세율 적용 배제, 납세자의 사망 시점에 미실현 양도소득 과세
-USD 373 billion 추가 확보

01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세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영향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하는 세제 혜택 및 감면 계획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유하는 경우 바이든 당 선인이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다음의 세제 정책들은 야당 주도의 의회에 의해 수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가져갈 지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몇 년간 상당한 세법개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 자녀 돌봄 및 가족 요양보호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의 확대 적용
- ✓ 일시적으로 자녀 돌봄 세액 공제의 증액 및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재정비
-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USD 15,000 세액 공제
- ✓ 자동 개인연금계좌(IRA),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 공제
- ✓ 개인연금계좌(IRA)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고용인(Worker)의 적립액 공제 대신 26%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적용

02 법인세 및 사업자 과세 방향 제안



세원잠식과 최저한세 (Base erosion and minimum taxes)

- ✓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의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 "GILTI")시 유효세율을 현행 10.5% (2025년까지 적용)에서 21%로 인상하며, 해외 자회사의 유형자산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폐지
- ✓ GILTI를 각 해외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가 고세율 국가의 GILTI를 저세율 국가의 GILTI와 상계하는 것을 방지
- ✓ 회계상 손익이 USD 100 million 초과하나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기업들에 대해 회계상 손익에 15%의 세율로 최저한세를 부과

* Return on adjusted basis of foreign tangible property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과 일자리의 미국 내 재유치 (Offshoring and re-domestication of US jobs)

- ✓ 해외 이전 가산세(Offshoring Tax Penalty)를 도입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법인세(28%)에 추가 10%를 가산하여 과세
- ✓ "Made in Americ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 시설을 미국내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 폐쇄되었거나 문을 닫는 제조시설을 재활성화 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제조업 경쟁력 및 고용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하는데 발생한 특정 비용의 10%를 세액공제 허용

02 법인세 및 사업자 과세 방향 제안



파트너십 사업소득의 과세

(Taxation of passthrough business income)

- ✓ 현행 연방세법 199A조에 따르면 파트너십의 파트너, LLS의 멤버 등은 특정 적격사업소득에 대해 최대 20%를 공제받음
- ✓ 바이든 당선인은 연소득이 USD 400K 이상인 납세자의 파트너십 사업소득에 대한 특정 적격사업소득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제안하였음



산업별 제안

(Sector-specific proposal)

- ✓ 기존에 부동산 투자자들 특히, 연간소득이 USD 400k 이상인 납세자들에게 제공되었던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중단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 동종자산교환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상의 내용을 폐지할 것으로 해석됨)
- ✓ 자산이 USD 50 billion 이상인 금융기관의 특정 부채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 ✓ 제약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광고비 손금공제 폐지 및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의약품 원가 인상에 대해 가산세 부과
- ✓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 중단
- ✓ 태양광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유지, 탄소 저감 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의 지원



공동체와 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Community and workforce development incentives)

- ✓ 낙후 지역의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개정된 세법(TCJA)의 기회 특구(OpportunityZone) 프로그램을 유지하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분명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유지
- ✓ 신(新)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와 근로기회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를 확대 적용하며, 다수의 일자리가 소멸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조업 커뮤니티 세액공제(manufacturing communities credit)규정을 신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

03 개인소득세 과세 방향 제안



소득세율 및 공제

(Income tax rates and deductions)

- ✓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 (2025년까지 적용 후 39.6%로 복귀)에서 39.6%로 인상
- ✓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소득공제 (itemized deduction) 한도 규정인 "Pease Limitation"을 재도입하고 28%을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



양도소득과 배당, 성과보수

(Capital gains and dividends, carried interests)

- ✓ 연간소득이 USD 1 million 이상인 납세자의 장기 보유 양도소득 및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세율(현행 최고 20%)을 폐지하고, 일반소득 세율 적용(최대 39.6%)
- ✓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펀드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보고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

03 개인소득세 과세 방향 제안



상속 및 증여세 (Transfer taxes)

- ✓ 2020년 기준으로 자산을 증여 및 상속할 시 USD 11.58 million 을 한도로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 증여 및 상속은 최대 40%의 세율로 과세됨. 바이든 당선인은 증여 및 상속 시 공제한도를 2009년 기준 금액인 USD 3.5 million 수준으로, 또한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5%로 과세하는 것으로 복귀할 것을 지지
- ✓ 상속 시에 세무 목적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증액하도록 허용하는 세법(basis step-up)을 폐지하고 미실현 양도소득 과세



급여 원천세 (Payroll taxes)

- ✓ 현재 고용인(employee)의 급여 소득 USD 137,700을 한도로 급여 소득에 대해 12.4%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과세하고 있으며(고용주와 고용인이 반씩 부담), USD 137,700를 초과하는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과세하지 않음. 바이든 당선인은 USD 137,7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제도와 더불어 추가로 USD 400k를 초과하는 급여에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 USD 137,700를 초과하면서 USD 400k 미만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과세는 불확실함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